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23

발의연월일: 2025. 2. 13.

발 의 자:윤준병·송옥주·서삼석

박희승 • 박홍배 • 민병덕

민형배 · 신영대 · 조계원

박민규 • 이원택 • 김태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30억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어업을 제외한 제조업·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있음.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이 2023년부터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 향되었으나 여전히 가업상속공제와 큰 차이가 있어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 공제의 한도 금액을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0 억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원,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영농기간에 따라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을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한다.
- 1. 피상속인이 5년 미만 계속하여 영농한 경우: 30억원
- 2. 피상속인이 5년 이상 10년 미만 계속하여 영농한 경우: 50억원
- 3.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한 경우: 100억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농상속공제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영농상속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	
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	
(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u>금액(30</u>	
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후단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u>신설></u>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
	<u>다.</u>
<u><신 설></u>	1. 피상속인이 5년 미만 계속하
	여 영농한 경우: 30억원
<u><신 설></u>	2. 피상속인이 5년 이상 10년
	미만 계속하여 영농한 경우:
	<u>50억원</u>
<u><신 설></u>	3.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여 영농한 경우: 100억원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